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금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등 방역관리지침 알림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6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에서는 농장 및 축사 출입구에 관련 법령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은 철저하게 소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20/'21년 동절기 및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농장 부출입구에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없거나 정상 운영되지 않아 출입 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 미실시, 농장 종사자가 축사의 뒷문 등을 통해 출입하면서 소독 미실시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등 방역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관계기관 및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서는 가금농장에 널리 알려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전담관은 각 가금농장에 육성을 통해 이번 방역관리지침을 설명하고 준수 당부

5. 아울러, 국내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방역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앙점검반(검역본부·방역본부) 및 지자체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기준 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가금농장 부출입구, 축사 뒷문 등 방역관리지침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행정안전부장관(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주무관 **박제민** 사무관 **김석재**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전결 2021.11.17.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0590 (2021. 11. 17.) 접수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6 팩스번호 044-863-9210 / parkjemin@korea.kr / 대국민 공개